

경기도교육청

	외국인 전형	내국인 전형
입학 자격	▶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 (학생국적 무관)	▶외국거주 3년 이상인 내국인학생(복수국적 포함) ▶부모 양쪽 모두 내국인인 외국국적 학생(외국거주 3년 필요)
입학 자격 세부 해설	-부모 중 1인이라도 외국인일 경우에는 자녀가 내국인이라도 외국 거주 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■ 외국 거주기간 3년은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한 출국기간이 365×3년=1,095일 이상, -또는 외국의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총 3년에 해당하는 학기를 수료·졸업한 경우를 포함함 ※ 학사 기준(1년 2학기) 총 6학기 공식 성적 제출 가능한 경우, 1,095일 미만 학생도 지원은 가능/단, 아래 사례 제외)</p> <p>■기타 사례 불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년 거주 + 2년 학교 재학(×) ▶ 미인가 학교 재학 3년(×) ▶ 1년 유치원 + 2년 초등(×) ▶ 학교에서 정규과정(동일교과목)이 아닌 어학연수 등의 과정 수료(×) ▶ 재학은 하였으나, 과목 미이수, 성적미산출, 결석 등으로 해당 학기가 수료되지 않는 경우(×) </div>
제출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여권/시민권사본 -부모와 자녀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·가족관계증명서 ·출생증명서 ·기타 증빙자료 -이중국적 확인 ·외국인등록증(사실증명서) ·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확인증 (사실증명서) ·가족관계증명서(국적상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여권사본 -출입국사실증명서 -6학기 이상 해외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① 학교장 직인(서명) 확인 ② 성적 산출확인(미산출시 불인정) ③ 해외학교가 정규학교임을 확인 ④ 아포스티유 발급(또는 영사관 확인) ⑤ 교육부홈페이지(정책>초·중·고 교육>교육과정)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확인 ⑥ 기타 정규학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※ 타 외국인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재학했던 학생에 대해서도 위의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사정 실시